

규모별 돼지 분뇨처리 모델

- 홍보부 -

◇……본고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가축 분뇨 퇴비화 및 뇌·오수 정화 방법에 관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동안에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발간한 「새로운 가축분뇨 처리기술」중에서 일부를 발췌, 요약한 것입니다……<편집자주>◇

돼지를 사육함으로써 발생되는 돈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전업 소규모 500두(250~750), 전업 중규모 1,000두(750~1,500두), 전업 대규모 3,000두(2,000~4,000두) 및 단지규모인 10,000규모로 구분하여 돈사형태 즉, 돈분뇨의 수거형태에 따라 적정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.

돈사형태는 크게 나누어 인력수거방식, 스크래퍼식(분뇨분리 및 분뇨혼합), 슬러리 돈사로 구분하였고 분뇨의 처리방법은 분의 경우 퇴비화 및 건조방법 등을 통한 유기질 비료화, 뇌 및 세정수는 저장액비화 및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, 퇴비화 시설 및 정화시설은 수거되는 돈분뇨의 형태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였다.

1. 전업 소규모 : 500두(250~750두)

전체 양돈농가 34,863호 중 500두이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31,170호로 89.4%를 차지하고 있다.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의 양돈농가에서 돈

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야만 양돈으로 인한 환경 오염부하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.

따라서 전업 소규모(돼지 500두 규모)에서의 돈분뇨 적정처리 방법에 대하여 돈사의 돈분뇨 수거형태에 따른 적정 처리모델을 제시하였다. 돈사형태는 인력식과 스크래퍼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인력식 수거방식에서는 분과 뇌가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분은 퇴비화 시설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 제조시 퇴비사의 경우에는 273m³, 퇴적송풍식의 경우에는 발효조 48m³, 2차 발효조 160m³의 용적이 필요하며, 톱밥 등 수분조 절재 수급원활지역에서 주로 이용이 쉽게 될 수 있다. 그러나 전업소규모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돈사내에서 분뇨를 분리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만 효과적인 돈분뇨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.

돈사내에서 분뇨분리가 되어 수집되어진 뇌·오수는 저장액비화법과 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저장액비화방법으로 이용시 1,705m³의 용적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저장시킬 수 있고,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경지면

〈표1〉 전업 소규모(500두)

사육 규모	축사형태	수거 형태	처리방법	처리 공정	소요 시설	기본 조건
전 업 소규모 (500두)	평면바닥 (인력수거)	분뇨	분 : 퇴비화	분 → 퇴비화, 건조 → 유기질비료화	- 퇴비사 : 273m ³ - 통풍식 : 발효조 47.5m ³ , 퇴비사 160m ³ - 소형건조기 : 0.5m ³	- 돈사내 분뇨분리 - 퇴비화 일수 : 165일 - 톱밥수급 원활지역, 특정지역 및 2차 발효 가능지역
					- 저장액비화 : 1,705m ³	- 6개월이상 저장가능 - 액비살포 경지확보면적
		분리	뇨 : 정화, 액비화	뇨 → 저장액비 → 경지환경 뇨 → 정화처리 → 방류	- 간이정화조 : 12m ³ × 3 - 톱밥토양여과상 : 40.4m ³	- 돈사내 분뇨분리 - 침전조 주1회청소, 톱밥교체(3개월)
					- 퇴비사 : 291m ³ - 통풍식 : 발효조 50m ³ , 퇴비사 171m ³ - 소형건조기 : 0.5m ³	- 돈사내 분뇨분리 - 퇴비화 일수 : 165일 - 톱밥수급 원활지역, 특정지역 및 2차 발효 가능지역
	스크래퍼식 돈 사 (기계식수거)	분뇨	분 : 퇴비화	분 → 퇴비화, 건조 → 유기질비료화	- 저장액비화 : 1,705m ³	- 6개월이상 저장가능 - 액비살포 경지확보면적
					- 간이정화조 : 12m ³ × 3 - 톱밥토양여과상 : 40.4m ³	- 돈사내 분뇨분리 - 침전조 주1회청소, 톱밥교체(3개월)
		분뇨 혼합	분뇨 : 퇴비화, 액비화	분 → 퇴비화, 건조 → 유기질비료화	- 퇴비사 : 454m ³ - 통풍식 : 발효조 79m ³ , 퇴비사 267m ³ - 소형건조기 : 2.5m ³	- 돈사내 분뇨분리, - 퇴비화 일수 : 165일. - 1차발효분 수분조절제로 재이용 - 톱밥수급 원활지역, 특정지역 및 2차 발효 가능지역
					- 저장액비화 : 2,060m ³	- 6개월이상 저장가능 - 액비살포 경지확보면적

적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.

스크래퍼식 돈사에서는 분뇨분리방식과 분뇨 혼합수거방식으로 구분되어지며, 분뇨혼합시에 돈분뇨를 퇴비화하려면 퇴비사 454m³, 통풍식발효조 79m³, 2차발효조 267m³의 용적이 소요되어 분뇨 분리시보다 약 158%정도 더 필요로 하므로 돈사내에서 분뇨처리가 최우선되어야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돈분뇨의 처리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.

2. 전업 중규모 : 1,000두(750~1,500두)

전업 중규모(돼지 1,000두 규모)에서의 돈분뇨 적정처리방법은 돈사형태에 따라 스크래퍼식 분뇨분리수거형태와 분뇨혼합수거 형태 및 슬러리

식 돈사에서의 분뇨혼합 수거로 구분하였으며, 스크래퍼식 분뇨분리방식에서 돈분은 퇴비사(454m³), 통풍식(발효조79m³, 2차퇴비사 267m³) 등의 방식으로 유기질 비료화하고 뇨 및 세정수는 저장액비화법으로 이용시 2,700m³의 용적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저장시킬 수 있고,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경지면적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.

또한 뇨 및 세정수는 활성오니법(224m³)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분뇨혼합 수거 및 슬러리식 돈사에서는 분뇨를 톱밥 등의 수분조절제를 혼합하여 퇴비사(79m³), 통풍식발효 시설(발효조 79m³, 퇴비사 267m³)을 이용하여 퇴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

〈표2〉 전업 중규모(1,000두)

사육 규모	축사형태	수거 형태	처리방법	처리 공정	소요 시설	기본 조건
전 업 중규모 (1,000두)	스크래퍼식	분뇨 분리	분 : 퇴비화	분 → 퇴비화, 건조 → 유기질비료화	- 퇴비사 : 454 m ³	- 돈사내 분뇨분리 : 공통 - 퇴비화 일수 : 165일 - 1차발효분 수분조절재로 재이용 - 1차발효 15일, 2차발효 60일 이상 - 통풍식 : 발효조 79 m ³ , 퇴비사 267 m ³ - 톱밥수급 비원활지역 : 겨울철 대비 발효상 용적 추가 설치
					- 저장액비화 : 2,700 m ³	- 6개월 이상 저장가능 - 액비살포 경지 확보면적
		뇨 : 정화, 액비화	뇨 → 저장처리 → 방류		- 활성오니법 : 224 m ³	- 돈사내 분뇨분리
		분뇨 혼합	분뇨 : 퇴비화	분 → 퇴비화, 건조 → 유기질비료화	- 통풍식 : 발효조 73 m ³ , 퇴비사 267 m ³	- 1차발효 15일, 2차발효 60일 이상 - 톱밥수급 비원활지역 : 겨울철 대비 발효상 용적 추가 설치
	슬러리식	분뇨 혼합	분뇨 : 퇴비화	분 → 퇴비화, 건조 → 유기질비료화	- 퇴비사 : 454 m ³	- 돈사내 분뇨분리 : 공통 - 퇴비화 일수 : 165일 - 1차발효분 수분조절재로 재이용 - 1차발효 15일, 2차발효 60일 이상 - 통풍식 : 발효조 79 m ³ , 퇴비사 267 m ³ - 톱밥수급 비원활지역 : 겨울철 대비 발효상 용적 추가 설치 - 건조식(화력건조)
					- 톱밥수급 원활지역, 특정지역 및 2차발효 가능지역	

3. 전업 대규모 : 3,000두(2,000~4,000두)

전업대규모(돼지 3,000두 규모)에서의 돈분뇨 적정처리 방법은 돈사형태에 따라 스크래퍼식 분뇨 분리 수거형태와 분뇨 혼합수거형태로 구분하였다. 스크래퍼식 분뇨 분리방식의 경우에 돈분은 퇴비화방법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화하고 뇌 및 세정수는 정화처리 또는 저장 액비화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였다.

돈분의 퇴비화방법에서는 기계교반식 발효시설(발효조 247 m³, 2차발효시설 267 m³)이 필요하다. 그러나 현재 축산폐수정화시설 표준설계도에는 2차발효시설의 용적이 산출되어 있지 않아 양돈농가에서 2차발효시설의 설치에 대한 관심이 낮으나, 2차발효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야 효과적인 양돈분뇨의 퇴비화가 가능하다.

1차발효된 퇴비를 수분조절재로 재활용할 경

우 수분조절재 사용량을 줄이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. 또한 대형건조기를 이용하여 축분을 1차 건조시킨 후 이를 2차 발효시키는 형태의 방식도 추천될 수 있으나 건조기 형태는 강제로 수분증발 만을 시킨 것이므로 반드시 2차발효를 실시한 후 토양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.

뇌 및 세정수를 저장액비화법으로 이용시 41,200 m³의 용적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저장시킬 수 있고,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경지면적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. 또한 뇌 및 세정수는 활성오니법(2,240 m³)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

4. 단지규모 : 10,000두

단지규모(돼지 10,000두 규모)에서의 돈분뇨 적정처리 방법은 돈사형태에 따라 스크래퍼식 분

〈표3〉 전업 대규모(3,000두)

사육 규모	축사 형태	수거 형태	처리방법	처리 공정	소요 시설	기본 조건	
전 업 대규모 (3,000두)	스크래퍼식	분뇨 분리	분 : 퇴비화	분 → 퇴비화, 건조 → 유기질비료화	- 교반식발효시설 발효조 : 247 m ³ 퇴비사 : 267 m ³	- 돈사내 분뇨분리 : 공통 - 1차발효분 수분조절재로 재이용 - 1차발효 15일, 2차발효 60일 이상 - 톱밥수급 비원활지역 : 겨울철 대비 발효상 용적 추가 설치	
					- 대형건조기 : 4.5톤형	- 수급조절재 원활지역 및 2차 발효 가능지역	
		뇨 : 액비화, 정화		뇨 → 저장액비 → 경지환원	- 저장액비화 : 41,200 m ³	- 6개월 이상 저장 가능 - 액비살포 경지확보면적 - 돈사내 분뇨분리	
				뇨 → 정화 → 방류	- 활성오니법 : 2,240 m ³	- 돈사내 분뇨분리 철저 - 전담직원 채용	
	분뇨 혼합	분뇨 : 퇴비화	분 → 퇴비화, 건조 → 유기질비료화		- 교반식발효시설 발효조 : 247 m ³ 퇴비사 : 267 m ³	- 돈사내 분뇨분리 : 공통 - 1차발효분 수준조절재로 재이용 - 1차발효 15일, 2차발효 60일 이상 - 톱밥수급 비원활지역 : 겨울철 대비 발효상 용적 추가 설치	
					- 대형건조기 : 4.5톤형	- 수급조절재 원활지역 및 2차 발효 가능지역	

뇨 분리수거 형태와 분뇨 혼합수거 형태로 구분하였으며, 스크래퍼식 분뇨분리방식의 경우 돈분은 퇴비화방법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화하고 뇌 및 세정수는 정화처리 또는 저장액비화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였다.

돈분의 퇴비화방법으로는 기계교반식 발효시설(발효조 1,031 m³, 2차발효시설 1,906 m³)이 필요하다. 그러나 현재 축산폐수정화시설 표준설계도에는 2차발효시설의 용적이 산출되어 있지 않아 양돈농가에서 2차발효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이 낮으나 2차발효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야 효과적인 양돈분뇨의 퇴비화가 가능하다. 1차발효된 퇴비를 수분조절재로 재활용할 경우 수분조절재를 절약할 수 있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. 또한 대형건조기를 이용하여 축분을 1차건조시킨 후 이를 2차발효시키는 형태의 방식도 추천될 수 있으나, 건조기형태는 강제로 수분증발만을 시킨 것이므로 반드시 2차발효를 실시한 후 토양에 환

원되도록 해야 한다.

뇨 및 세정수의 경우 저장액비화의 방법으로 이용시 41,200 m³ 이상의 용적이 있어야 하며 또한 6개월 이상 저장시킬 수 있고,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경지면적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.

5. 양돈분뇨 자원화처리 모델에 따른 종합의견

가. 적용가능성

양돈농가에서 현실적으로 돈분뇨 자원화 방법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돈분뇨의 처리방법中最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은 퇴비화, 저장액비화 및 건조방식이다.

이를 지역별로 본 모델을 이용하여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한다. ①

〈표4〉 단지규모(10,000두)

사육 규모	축사 형태	수거 형태	처리방법	처리 공정	소요 시설	기본 조건
단지규모 (10,000두)	스크래퍼식	분뇨 분리	분 : 퇴비화	분 → 퇴비화, 건조 → 유기질비료화	- 교반식발효시설 발효조 : 1,031 m ³ 퇴비사 : 1,906 m ³ - 대형건조기 : 50톤형 - 생석회 처리 : 1.5톤형	- 돈사내 분뇨분리 : 공통 - 1차발효 15일, 2차발효 60일 이상 - 톱밥수급 비원활지역 : 겨울철 대비 발효상 용적 추가 설치 - 톱밥수급원활지역 및 2차발효 가능지역 - 건조면적 많이 필요, - 신선돈분뇨 이용 - 생석회 순도
					- 저장액비화 : 41,200 m ³	- 6개월이상 저장가능, - 액비살포 경지확보 면적 - 돈사내 분뇨분리
		뇨 : 정화, 액비화	뇨	뇨 → 정화 → 방류	- 활성오니법 : 2,240 m ³	- 돈사내 분뇨분리 - 전답직원 채용 - 돈사내 분뇨분리 : 공통
	분뇨 혼합	분뇨 : 퇴비화	분 → 퇴비화, 건조 → 유기질비료화	- 교반식발효시설 발효조 : 247 m ³ 퇴비사 : 267 m ³ - 대형건조기 : 50톤형 - 생석회 처리 : 1.5톤형	- 1차발효분 수분조절재로 재이용 - 1차발효 15일, 2차발효 60일 이상 - 톱밥수급 비원활지역 : 겨울철 대비 발효상 용적 추가 설치 - 톱밥수급원활지역 및 2차발효 가능지역 - 건조면적 많이 필요, - 신선돈분뇨 이용 - 생석회 순도	- 돈사내 분뇨분리 : 공통 - 1차발효분 수분조절재로 재이용 - 1차발효 15일, 2차발효 60일 이상 - 톱밥수급 비원활지역 : 겨울철 대비 발효상 용적 추가 설치 - 톱밥수급원활지역 및 2차발효 가능지역 - 건조면적 많이 필요, - 신선돈분뇨 이용 - 생석회 순도
					- 교반식발효시설 발효조 : 1,031 m ³ 퇴비사 : 1,906 m ³ - 대형건조기 : 50톤형 - 생석회 처리 : 1.5톤형	- 돈사내 분뇨분리 : 공통 - 1차발효분 수분조절재로 재이용 - 1차발효 15일, 2차발효 60일 이상 - 톱밥수급 비원활지역 : 겨울철 대비 발효상 용적 추가 설치 - 톱밥수급원활지역 및 2차발효 가능지역 - 건조면적 많이 필요, - 신선돈분뇨 이용 - 생석회 순도
	슬러리 돈사	분뇨 혼합	분뇨 : 퇴비화	분 → 퇴비화, 건조 → 유기질비료화	- 교반식발효시설 발효조 : 1,031 m ³ 퇴비사 : 1,906 m ³ - 대형건조기 : 50톤형 - 생석회 처리 : 1.5톤형	- 돈사내 분뇨분리 : 공통 - 1차발효분 수분조절재로 재이용 - 1차발효 15일, 2차발효 60일 이상 - 톱밥수급 비원활지역 : 겨울철 대비 발효상 용적 추가 설치 - 톱밥수급원활지역 및 2차발효 가능지역 - 건조면적 많이 필요, - 신선돈분뇨 이용 - 생석회 순도

부자재 종류, ② 부자재 생산량, ③ 부자재 수급 경제성, ④ 분뇨처리시설 설치면적, ⑤ 액비 농지 환원 가능성, ⑥ 주변경종농가와의 연계성, ⑦ 청정지역여부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.

나. 모델적용의 한계성

모델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성은 지역적, 기술적, 구조적 한계성 등을 들 수 있다.

첫째, 지역적 한계성이다. 현재의 퇴비발효방식이 톱밥등의 수분조절 부자재 중심의 자원화방

법이므로 모델성공여부는 지역별 수분조절재 수급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.

둘째, 기술적 한계성이다. 톱밥등의 수분조절재 이용량은 분에 함유된 수분함량과 비례함으로 현행 배출분뇨의 수분발생량을 절감할 수 있는 사육시설 및 수분증발 시설의 개발이 필요하다.

셋째, 구조적 한계성이다. 수분조절 부자재를 이용한 돈분의 퇴비화가 양호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돈뇨·세정수를 액비로 이용할 수 있는 농축산 산업간의 상호 보완적 농업구조의 변화가 모델적용시 필수적이다.